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510
----------	-------

발의연월일 : 2026. 6. 25.

발 의 자 : 김종양 · 이달희 · 서천호  
고동진 · 정희용 · 김성원  
박덕흠 · 강대식 · 한기호  
윤영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이용 후 도로·보도·자전거 전용도로 등에 무단 방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이러한 무단 방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특히 고령자·장애인 등 이동 약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사고 위험 또한 증가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대여용 개인형 이동장치가 사업자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방치 책임 소재와 단속 근거가 불분명하여 지자체와 경찰 모두 적극적인 단속을 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로 인해 현장에서 법적 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질서와 도시환경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음.

이에 시장등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충전시설 및 대여용 개인형 이동장치 반납구역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개인형 이

동장치의 주차시설 또는 반납구역 외의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방치하지 못하도록 하며,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무단 방치된 대여용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수거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방치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권을 보호하며, 교통질서 유지와 도시환경 개선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 신설 등).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시설 등) ① 시장등은 안전표지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가 허용된 구역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구역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2. 개인형 이동장치 충전시설
3. 대여용 개인형 이동장치의 반납구역

② 시장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구역을 설치하는 때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55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제55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구역 외의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장치가 제5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구역 외의 장소에 무단으

로 방치되지 아니하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수거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보관·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5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방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6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제5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방치한 사람

제160조제2항에 제4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6. 제5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수거조치를 하지 아니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u>제55조의2(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시설 등) ① 시장등은 안전표지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가 허용된 구역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구역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u></li> <li><u>2. 개인형 이동장치 충전시설</u></li> <li><u>3. 대여용 개인형 이동장치의 반납구역</u></li> </ol> <p><u>② 시장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구역을 설치하는 때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u></p>
<p><u>&lt;신 설&gt;</u></p>	<p><u>제55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제5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구역 외의 장소에 개</u></p>

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  
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  
자는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  
장치가 제55조의2제1항 각 호  
에 따른 시설 또는 구역 외의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지 아  
니하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수  
거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방치된 개인형 이  
동장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보  
관·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  
35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  
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  
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방치 기  
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 13. (생략)

<신설>

제156조(벌칙) -----  
-----  
-----  
-----.

1. ~ 13. (현행과 같음)

14. 제5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제160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의5. (생략)

<신설>

5. ~ 10. (생략)

③ · ④ (생략)

개인형 이동장치를 방치한 사람

제16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4의5. (현행과 같음)

4의6. 제5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수거조치를 하지 아니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

5. ~ 10.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